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김종필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2월 28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3일

3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,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은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른 위임법명 개정(안 제1조)

나. 법명 약칭 및 근거 조문 등 개정(안 제2조, 제4조, 제6조)

다. 주택의 소유자는 지원받은 소방시설의 기능을 유지·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7조)

5. 검토내용

○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법령을 변경하고,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소유자가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

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- 안 제1조 및 제2조, 안 제4조 및 제5조는 근거법령을 정비함.
- 안 제7조는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·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.

<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>

제10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(이하 "주택용소방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
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

- 기타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 예고('23. 3. 8. ~ '23. 3. 14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법령을 변경하고,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소유자가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